

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195

제출년월일 : '01. 3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행정규제 내용의 개정을 통해,
 -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"마을관리휴양지 행위허가 및 제한" 삭제(제6조)
 - 부지의 사용, 공작물 설치, 물품판매 및 상업행위,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 삭제.
- "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취소" 삭제(제8조)
 -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,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는 허가취소 내용 삭제
- "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권리 양도의 제한" 삭제(제9조)
 -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가 불가하도록 규정한 내용 삭제

□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중 "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"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행위의 허가 및 제한) ①마을관리휴양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지의 사용 2. 공작물의 설치 3. 물품판매 및 상업행위 4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<p>②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⑥행위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8조(허가취소) 군수는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.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.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.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.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한 때 6. 기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	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권리양도의 제한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</u>, <u>평창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</u> 및 <u>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</u>를 준용한다.</p>	<p>제17조(준용) ----- ----- <삭제> ----- ----- -----</p>
<p>[별지제1호서식] 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신청서</p>	<p>[별지제1호서식] <삭제></p>
<p>[별지제2호서식] 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서</p>	<p>[별지제2호서식] <삭제></p>